

의안번호	제 205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7월 22일 (제302회)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1년 7월 11일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
----------	-----

발의연월일 : 2011년 7월 11일

발의자 : 박문희 · 김봉희 · 정현 · 김종필 ·
김희수 · 윤성옥 · 황규철 의원(7명)

1. 제안 이유

-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삭제됨으로써 기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문을 신설함은 물론, 도세감면 조문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예비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문 신설(안 제5조)
- 나. 사회적기업 등, 연계기업에 대한 도세감면 조문 신설(안 제9조)
- 다.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10조, 안 제17조 등)

3. 조례안 : 불임

4. 관계법령 발췌 : 불임

5. 예산조치 : 2,866,850천원(국비 2,645,000천원, 도비 221,850천원)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 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 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률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3.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4. 도와 시·군간 협력
5.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와 기반 구축
6.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정 및 육성)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

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심사를 위해 충청북 도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지역내 학계, 경영계,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소장과 민간전문가 등 10명이내로 구성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 대상 선정

3. 그 밖에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장비구입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적인 기술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해 사전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 한도는 해당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도세 감면)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 또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재화, 서비스의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사회적기업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도지사는 지역 내 공공서비스 공급 및 도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도지사는 도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도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망의 구축·운영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치

제13조(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사회적기업등의 발굴과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3. 전문가 포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4조(보고 등) ①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지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규칙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제14조 제3항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7조(실비보상 등) ①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

관계 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

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8]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3.31>

②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

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 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4.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우선 구매 및 법 제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5. 예산 등 재원 조달 계획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지원계획(이하 "연도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2. 연도별 지원계획: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9]

□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개정 2010.6.4>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5.31, 2010.6.8>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7 각 호의 사항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6.4>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